

제조·수입·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(제3조의7제1항 관련)

구 분	중단기간
1.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·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	3개월
2.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·제품의 제조·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	6개월
3.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·제품의 제조·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	1년

비 고

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 규모, 사업 지역의 특수성,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